

광주체육고등학교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 정	2009.09.28
제 1차 개정	2010.07.01
제 2차 개정	2015.07.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내 학생들의 수영교육의 활성화와 일반인들에게 생활체육의 장으로 제공하며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광주체육고등학교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개방에 따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 ① 광주체육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본교 수업 및 학교 수영선수들의 훈련·초등학교 수영교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영장을 개방한다.
- ② 수영장 개방시간은 06:00~12:00(08:00~09:00제외, 수영장 수질정화), 18:00~21:00로 한다.
다만, 개방시간 이외에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일부 2015.07.21.)

제3조 (휴장일)

- ① 수영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및 임시공휴일 포함)
 2. 기타 수영장 보수 및 각종 행사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학교장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휴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장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입장)

- ①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 제1호>에 정한 사용료를 납입한 후 회원증을 교부받아 사용한다.
- ②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작성하고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한다.

제5조 (사용허가)

- ① 수영장을 특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은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제출하여 사용일 5일전까지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6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인정하는 행사
2. 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20을 감면한다.
5.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는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6. 만 12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단, 그 외 연령은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7.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면제 및 감면신청서<별지 제3호>의 서식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 ① 기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수영장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수영장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학교장이 수영장 사용을 금지한 때
 3. 기타 질병·입원치료 등 학교장이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인정할 때
-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 월중 이용일수가 15일을 초과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후 반환한다.
또한 강습을 연기할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에는 익월 강습반으로 1회에 한하여 연기 가능하고,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규정을 따른다.(일부개정 2015.07.21.)

제8조 (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영장의 입장을 금지한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자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음주자 및 수영장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피부질환자 또는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신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시설사용에 따른 청결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수사항)

수영장을 사용하는 자(각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입장한 자 전원 포함)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는 학교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
2. 수영장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기지 않을 것
3. 수영장내에 위험 또는 불결한 물품 등을 가져오지 말 것
4. 허가 없이 물품의 판매행위를 하지 말 것
5. 소음, 고성을 발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6. 관계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를 것

제11조 (재정)

수영장 개방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은 광주체육고등학교회계에 계상한다.

부 칙(2009.9.28)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9.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